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보유자가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운행중지기간 동안 보험 등의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20046호, 2024. 1. 16. 공포, 2025. 1. 17 시행)됨에 따라 보험 등의 계약기간 유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자동차보험정비협회의 위원장이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하는 경우의 의결 요건을 정하는 한편,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한 경우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종료일의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3(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)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은 자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유예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하 “보험회사등”이라 한다)에게 운행중지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

의 계약기간 내 한차례에 한하여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기간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유예기간이 보험 또는 공제의 잔여 계약기간보다 긴 경우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하 “보험회사등”이라 한다)가”를 “보험회사등이”로 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심의촉진안 표결) ①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의 표결선포 후 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일방이 퇴장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각 3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전화,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표결 시 퇴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9조의4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3호까지의 업무 및”을 “제4호까지의 업무 및”으로, “제3호까지의 업무를”을 “제4호까지의 업무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

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관련된 공제사기행위(공제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)의 조사 및 방지

③ 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의2제5항, 같은 조 제6항, 제1조의3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조의2(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한 경우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종료일의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</u> <u>⑥ 시·도지사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가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3(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)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은 자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유예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</u>
<u><신 설></u>	

제2조(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)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하 “보험회사등”이라 한다)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보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하 “보험회사등”이라 한다)에게 운행중지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내 한차례에 한하여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기간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유예기간이 보험 또는 공제의 잔여 계약기간보다 긴 경우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조(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) 보험회사등이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3(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심의촉진안 표결) ①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

제11조의2(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
의 업무) ① (생략)

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4호에
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
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5분의
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다만, 위원장의 표결선포 후 같
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부
터 제3호까지의 위원 일방이 퇴
장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
족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
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부터
제3호까지의 위원이 각 3명 이
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. 다만,
전화,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
요구를 받고도 위원이 정당한
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표
결 시 퇴장한 경우에는 그러하
지 아니한다.

제11조의2(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
의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
기관과 관련된 공제사기행위
(공제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

4.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<신 설> ③ (생 략)	<u>내용에 관하여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)의 조사 및 방지</u> 5. ----- -- <u>제4호까지의 업무 및</u> ---- ----- <u>제4호까지의 업무를</u> ----- ③ <u>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--	--